

## ●여성가족부공고 제2025-83호
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8월 27일

여성가족부장관

###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을 통하여,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‘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’ 이수시간을 총 120시간에서 총 100시간으로 조정(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2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03171,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
- 전자우편 : [ljh0922@korea.kr](mailto:ljh0922@korea.kr)
- 팩스 : 02-2100-6448

#### 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)→정보공개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(전화 02-2100-6448, 팩스 02-2100-64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